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실 시 단 계	'94.11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장의 감사선언</li> <li>· 도시정비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</li> <li>· 증인선서</li> <li>· 도시정비국 업무보고</li> <li>· 건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</li> <li>· 증인선서</li> <li>· 건설국 업무보고</li> </ul>	
	'94.12.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사무소 및 현지확인</li> <li>· 과별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과</li> <li>- 도시정비과</li> <li>- 지역교통과</li> <li>- 건축과</li> <li>- 지적과</li> <li>- 건설관리과</li> <li>- 토목과</li> <li>- 하수과</li> <li>- 공원녹지과</li> </ul> </li> </ul>	
	'94.12.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</li> </ul>	
감처 사리 결단 과계	'94.12.6 ~12.21.  '94.12.22. 12.2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사결과보고서 작성</li> <li>· 감사결과보고서 채택</li> <li>· 감사결과 보고(본회의)</li> <li>·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</li> </ul>	

**6. 감사요령**

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, 건설국의 각과별 및 동사무소로 1991. 4. 15.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,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**7. 행정사항**

1.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,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2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**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제의년월일 : 1994. 11. 4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**1. 개정이유**

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(법률 제4741호) 및 동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317호)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함.

**2. 개정주요골자**

○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.(안 제65조제3항)

**3. 개정근거 :**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3

**4. 규칙(안) : 별첨**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

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담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출석담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

전까지 의장이나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담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4조(결산의 심사) “생략” 제6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 ① “생략” ② “생략”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담변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담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담변하게 할 수 있다. ④ “생략” 제66조(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) “생략”	제64조(결산의 심사) “현행과 같음” 제6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 ① “현행과 같음” ② “현행과 같음”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담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출석담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담변하게 할 수 있다. ④ “현행과 같음” 제66조(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) “현행과 같음”

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  
청원에대한심사보고서

1994. 11. 2.  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주소: 마포구 성산2동 595(도시개발아파트 101-1011호)

성명: 이정 자외 38인

나. 소개의원: 윤명규 의원

다. 접수일자: '94. 9. 30.

라. 회부일자: '94. 9. 30.

마. 상정일자: 제25회의회(임시회) 제1차위원회(94.11.2.)상정, 질의토론, 채택

2. 청원요지

본 청원은 1995년에 개통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밤낮으로 매연, 분진, 소음등의 극심한 정신적, 경제